

北韓 相續 法

-러시아 및 중국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高大法大教授 崔 達 坤

序 說

1990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北韓家族法은 그 제5장에서 相續法을 담고 있다. 그 상속에 관한 규범들은 제46조에서 제53조 사이의 7개조문에 지나지 않으나 북한의 민법 또는 가족법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매우 크다.

위와 같이 상속법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 법의 조문만으로는 정확한 상속제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상속법의 내용이 성문화된 규정 그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사회주의 상속의 원칙이나 또는 북한 상속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구축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뜻에서 이 논문은 러시아연방의 민법전¹⁾과 중국상속법전을 참고하여 북한상속법의 내용을 그려 보고자 한다.

또 이 논문은 相續法의 諸原理라든가 基本原則들에 대한 검토는 일체 생략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I. 相續法의 體系

북한의 상속법은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상

속법을 가족법 속에 담고 있다. 종래의 시각이 상속이라는 것을 개인 재산의 취득원인 중의 하나로 보아 민법 속에 담았는데 반하여, 이번의 생각은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가족부양의 원천 중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학자의 「.....상속재산은 근로자들의 생활필수품에 국한되며 상속은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재산적으로 공고히 하고 가정성원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역할」²⁾을 한다는 말이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위와 같은 북한상속법의 체계는 유사한 가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사정과도 다르다. 중국은 1985년 상속법을 단행법전으로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상속법은 이론상 민법의 일부를 이룬다는 것은 명백하다. 중국의 민법초안이 그 속에 재산 상속권편을 망라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 있어서는 상속법은 가족법의 체계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아직 단행가족법전이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론상 가족법은 혼인법과 친자법이 그 근간이 되고 거기에 후견·보좌법을 망라한다. 상속법은 민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전 전체의 제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종합민법전의 작성이 어려워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되

1) 러시아연방은 작년 11월에 새로운 민법전 제1부를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제2부는 완연할 때까지 제정되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법전의 내용을 입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는 1964년의 러시아공화국의 민법전을 활용한다.
2) 리송녀, “공화국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라는 무기” <법학논집> (과학출판사, 1990) p. 177

는 부분인 상속법판을 단행법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상속법의 체계는 러시아법의 체계와는 물론 다르고, 중국상속법의 이론과도 다른 커다란 특성을 갖는다.

북한의 상속법은 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가족법전의 제5장 「상속」의 내용을 형성한다. 그 7개의 조문의 내용을 보면, 상속인(제46조), 상속분(제47조), 상속결격(제48조), 대습상속(제49조), 유언의 자유와 그 제한(제50조), 한정승인(제51조), 상속기간(제52조), 및 상속분쟁(제53조)이 그것이다.

러시아법과 중국법은 각각 34개조와 37개조로 이루어져 있어 북한법의 그것에 비하면 완전한 법전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 중 러시아법은 대륙법의 법률기술을 대단히 많이 받아들여 규정하고 있어 전통적인 구라파 가족법의 내용과 흡사하다. 다른 한 편 중국법 역시 기본적인 골격은 러시아법에 접근하고 있으나 중국 특유의 사정을 대변하는 규정들을 많이 담고 있다.³⁾

러시아법과 중국법의 내용과 이론은 소략하고 과도기적인 북한법을 해석·적용하는데 직접·간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제정되는 북한상속법의 모형으로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법연구에 매우 중요한 규범들이다.

II. 法定相續

1. 序 說

북한상속법은 法定相續과 遺言相續을 인정한다.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나 유언자유와 내용이 극

히 제한되는 북한의 실체에 있어서는 법정상속이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크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실제 이 법정상속이 북한가족법에 있어서 원칙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2. 相續의 開始와 그 承認

북한법에는 상속개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그런가 하면 북한법 제52조제1항은 「상속은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의 개시가 피상속인의 사망시인가 또는 상속인에 의한 의사표시인가 의심이 간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러시아법의 규범이 크게 참조가 될 수 있다. 동법은 「相續의 開始日은 死者(전 소유자)의 死亡日이거나, 또는 그가 死亡宣告된 경우에는 본법 제21조 제3항에 정하여진 날이다.⁴⁾」(동법 제528조)라 하고, 「相續財産을 取得하기 위하여는 相續者가 相續을 承認하여야 한다」(동법 제546조제1항)라 하며, 동조 제3항은 승인행위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북한법해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기준을 북한법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개시되고,⁵⁾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취득을 위한 별도의 승인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승인의 의사표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법은 또한 제546조 이하에서 승인방법이라든가 승인의 효과, 승인기간의 연장, 상

3) 예컨대, 제4조(개인의 도급에 의하여 얻어진 재산의 상속성), 제9조(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선언), 제31조(유증부양협정의 체결)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4) (추정) 사망이 선고된 공민의 사망일은 그의 사망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날이다. 사망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실종되었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재난 속에서 사망 하였으리라 추정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공민이 재난일에 사망하였다고 선고할 수 있다.

5) 이와 같은 취지는 중국상속법 제2조도 명문으로 규정한다.

속승인권의 이전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기술들이 북한의 상속 실체에 얼마나 적용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이 승인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의 개시시로부터 상속자에게 속한 것으로 본다」는 동법 제546조제6항의 규정은 북한법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믿는다.

상속 개시 장소에 대하여도 북한법은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러시아법 제529조는 「相續開始의 장소는 死者가 거주한 최후의 상주지이다. 그러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의 장소는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중요 부분이 있는 곳이다」라고 규정한다. 북한법에 있어서의 주소지는 공민등록을 마친 곳이기 때문에 공민등록지가 일단 개시의 장소라 본다. 그러나, 재산의 중요 부분이 있는 곳이 개시장소가 된다는 러시아법의 내용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3. 相續適格

1) 相續能力

어떠한 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협동단체나 국가는 수유능력이나 귀속체로서의 지위는 가지나 상속인으로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속은 가정재산을 상속인인 가족성원에게 넘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고, 상속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성원의 부양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공민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태아는 상속능력이 있을 것인가. 북한법에 이에 대하여도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러시아법 제530조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무유언의 경우와 유언의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死者의 사망시에 생존한 공민 및 死者의 사후에 출생한 자녀」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死者의 사망시에 생존했거나 死者 生存 중에 임신되어 그의 사후에 출생한 공민」이라 하여 널리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 의 경우에도 해석론을 통하여 처음부터 이를 긍정하고 있다.⁶⁾

중국법 제6조는 「無行爲能力者」의 相續權과 受遺權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사한다(제1항)고 하고, 「制限行爲能力者」의 相續權과 受遺權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사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뒤 행사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일정한 상속능력을 인정한다. 북한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어 상속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이론상 행위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상속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실제로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속의 승인이라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위무능력자나 제한행위무능력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행위나 또는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중국법의 제6조의 규정은 상속권자가 승인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2) 相續缺格

북한법 제48조는 상속의 결격사유로서 i) 피상속인을 몹시 학대했거나, ii) 피상속인을 의식적으로 돌보지 아니했거나, iii) 상속조건을 고의로 만든 자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이 세 가지에만 한정되어야 할 것인가는 좀더 해석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법과 러시아법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중국법 제7조는 상속권상실의 사유로서 i)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ii) 유산을 다투기 위하여 다른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iii)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또는 학대하여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iv) 유언을 위조, 변조 또는 파훼하여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의 넷을 들고 있다.

6)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1) p. 282

이에 대하여 러시아법 제531조는 상속을 할 수 없는 공민으로서 i) 불법행위에 기하여 상속을 발생하게 한 공민, ii) 친권이 박탈되어 회복되지 아니한 부모, iii) 死者에 대한 부양의무를 악의로 게을리 한 부모와 성년 자녀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상속결격사유를 살펴보면, 양국의 각 사유 중 대부분은 비록 북한법과 그 표현은 달리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명백히 북한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친권의 박탈은 상속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위를 통해서 보면, 북한법의 내용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두 나라의 법의 내용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4. 相續의 對象物

북한상속법이 상속의 대상물로 삼는 것은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특징적이다. 왜냐하면 근래에 와서 가정을 둘러싼 재산제도를 새로이 정립하여 그것이 매우 이례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의 개인소유제도의 一大變革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속법의 내용도 크게 달라지게 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 소유재산은 가정재산과 개인재산으로 나누어진다. 가정재산은 가정생활기간에 개별적 가정성원이 자기의 이름으로 소득한 금전과 그 밖의 물건인데, 가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 그것이 노동에 의한 분배이건, 국가사회로부터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 것이건 관계 없다. 가정재산은 가정의 물질적 생활의 원천이어서 가정성원 전체의 소유가 되어, 그 분할은 가정성원의 혼인이나 이혼과 같은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발생하고, 결코 상속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개인재산은 i) 공민이 그 가정의 성원으로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예컨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ii) 가정성원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아니건 개인적 용도에만 쓰이는 물건, iii) 국가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자기 명의로 받은 선물이 여기에 해당된다.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종래의 소유재산의 분류에 약간의 변경을 가하여 개인소유를 가정재산과 순수개인소유재산으로 나누고 있다.

순수 개인소유 재산은 가정재산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재산인데, 순수 개인소유 재산을 제외한 모든 일반 개인재산이 가정재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소유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다.

북한이 상속재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위의 재산 중 순수 개인소유 재산에 한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뜩이나 미미했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더욱 축소시킨 결과가 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상속도 그것이 법정상속인 경우에는 가정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⁹⁾ 별문제로 되지 아니하고 상속을 통하여 재산이 가정외로 분산되는 것은 유언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¹⁰⁾

상속의 대상물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그가 남에게서 받게 된 재산까지 받게 될 권리를 갖는가 하면, 다른 한편 채권자에게 변상할 재산상의 의무도 함께 상속하게 된다.

그러면,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것은 북한에서 개인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일단 상속의 대상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민법에 의하면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동법 제58조제1항)라고

7) 리송녀, 앞의 논문, pp. 173-4

8) 리송녀, 앞의 논문, p. 175

9) 윤중철,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소유권에 관한 이론" <법학논문집(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p. 127

10) 리송녀, 앞의 논문, p. 177

전제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동법 동조 제2항 및 제59조).

1. 근로소득(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2.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3.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4.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5.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긴 재산
6. 주택
7. 가정용품, 문화용품 및 생활용품
8. 승용차와 같은 기재

개인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의 예시는 매우 추상적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러시아법과 중국법의 내용을 찾아 본다.

러시아법은 개인소유의 대상을 소득과 저축, 주택, 주택의 일부, 가내 부속설비, 가내 일용품, 장신구를 들고 있고, 중국법은 상속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i) 수입, 가옥, 저축, 생산용품, 임목, 가축, 가금, 문물과 도서자료(이상 제3조 제1~4호), ii) 저작권·특허권 중의 재산권(이상 동조 제6호), iii) 법률이 공민 소유로 인정한 생산수단(동조 5호)이라고 직접 규정한다.

위의 두 나라 법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우리는 북한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수입과 저축
2. 장신구와 가정용품
3.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4. 가축과 가금
5. 국가사회로부터의 포상
6. 생산용품중에서의 간단한 개인용품
7. 주택 또는 주택의 일부
8. 승용차를 비롯한 기재

주택과 승용차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이상지향적이어서 실제로는 상속의 대상으로 되기는 힘들 것이다.

5. 法定相續人과 相續順位

북한법상의 상속순위는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이고(북한법 제46조제1항), 제2순위는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며(동법동조 제2항), 제3순위는 그 밖의 근친자(동조 제3항)이다.

제46조의 내용은 그 내용을 북한민법 이론과 러시아 및 중국상속법의 내용에 비추어 좀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법에 의하면 제1순위는 양자를 포함한 자녀, 배우자 및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이고, 제2순위는 형제자매, 부계와 모계의 조부모이다(러시아 민법 제532조). 그 밖의 근친자는 상속자로 될 수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년 이상 부양받은 노동무능력자는 제1순위의 상속인 또는 제2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중국상속법에 의하면 제 1순위는 배우자, 자 및 부모이고, 제 2순위자는 형제자매, 조부모 및 외조부모이다(동법 제10조 제1항).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그들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夫·妻의 부모에 대하여 주된 부양의무를 다한 때에는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동법 제12조). 또한 상속인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에 의하여 부양되어 온, 노동능력이 없거나 생활재원이 없는 자, 혹은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피상속인을 비교적 많이 부양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적당한 유산을 분급해 줄 수 있다(동법 제14조).

러시아법과 중국법의 상속인에 관한 규정들은 북한상속법을 해석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資本主義諸國의 법과 달리 사회주의법은 부모를 자 및 배우자와 함께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북한법에서 말하는「부모」란 實父母는 물론이고 養父母 및 부양관계에 놓여지는 繼父母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¹¹⁾ 「자녀」라 함은

적출자를 비롯한 넓은 개념의 자녀를 말할 것이므로 거기에는 양자녀는 물론이고 부양관계에 놓여지는 계자녀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손자녀」는 외손자녀도 포함되고, 「조부모」속에는 외조부모도 당연히 포함된다. 「형제자매」역시 넓은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거기에는 동부모의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同父異母 또는 同母異父의 형제자매, 養兄弟姊妹 뿐만 아니라 부양관계에 있는 繼兄弟姊妹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¹²⁾

제1순위와 제2순위자가 없거나 상속결격인 경우에는 제3순위자가 상속하게 된다. 제3순위자는 「그 밖의 근친자」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근친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가 문제로 된다. 북한의 경우 8촌까지의 친척 사이를 금혼범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범위를 8촌까지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종래 조선시대 이래 한국법의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4촌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한 4촌을 근친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북한의 법률논문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의견이 없다. 그러나, 생각건대 그들의 법문이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4촌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¹³⁾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은 부계 4촌을 뜻하는가 또는 모계 4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냐는 점 또한 분명하지 아니하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는 형제자매까지만 상속인의 범위 안에 넣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전혀 일어날 여지가 없으나, 북한에서는 해석상 중대한 문제점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생활이 반드시 부계혈연자들만으로써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가내재산의 「家産性」을 전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계로 한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로 생각된다.

「가까운 친척」인 제3순위의 상속인의 경우에는, 존수가 가까운 자는 먼 자를 배제하여 상속하는 근친상속의 원리가 북한법에서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중국법과 러시아법은 일정 조건 아래서 혈연자 이외의 자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러시아 민법 제532조제3항은 「死者의 사망시까지 1년 이상 死者에 의하여 부조된 노동무능력자는 법정상속인이 된다.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부조자는 상속하게 될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과 균등하게 상속한다고」한다. 또한 중국법은 상속인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에 의하여 부양되어 온 노동능력이 없거나 생활재원이 없는 자, 혹은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피상속인을 비교적 많이 부양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적당한 유산을 분급해 줄 수 있다」(동법 제14조)고 한다.

북한법은 러시아·중국의 두 나라 법과 같은 특수한 상속인을 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법의 규정방식은 위의 두 나라 법과 다르다.

위에서 우리는 북한법은 상속인을 인정하는 범위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법과 다른 점을 상속법 제46조의 규정을 통해서 보아 왔다. 그러나, 북한법의 큰 특색은 제46조가 실제에 있어서 2차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규정이라는 점에 있다. 즉, 그들은 가정재산의 보호와 가족성원의 경제적 부조라는 큰 목적에 입각하여,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은 「그와 한가정을 이루고 살던 성원들에게 넘어가도록 규제하고」¹⁴⁾ 있고, 법정상속은 「한 가정에서 살던 사람이 없는 경우」¹⁵⁾에 비로소 적

11) 중국상속법은 이것을 명문으로 규정한다(동법 제10조제4항).

12) 중국상속법 제10조제3항 및 제5항 참조

13) 어떤 견해는, 단사규정에서 규정하는 부양의 범위가 3촌이기 때문에 3촌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3촌에만 국한한다고 하면, 제46조제3항의 「...가까운 친척순으로 상속된다」는 文理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적어도 4촌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신영호, 「북한상속법의 내용과 문제점」〈송촌 박영우교수회 갑기념, 사법학의 재조명〉 1994, p. 732참조).

14) 윤종철,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소유권에 관한 이론」〈법학논문집(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평양, p. 127

15) 위와 같음

용되는 소위 「가정단위」¹⁶⁾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순수 개인재산도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가정에 귀속하고 제46조의 법정상속은 가족이 전혀 없거나 또는 유언상속의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혈연상속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기보다 「가정재산」승계를 위한 상속제도라고 하겠고, 또한 이러한 점에서 북한 상속법은 다른 사회주의법에서 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북한법 제49조는 「상속받기로 된 자가 상속시키는 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고 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습상속제도는 북한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두 법이 다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서로 좀 다르다. 북한법의 이해를 위하여 이를 소개하면, 러시아법은 「死者의 손자녀와 증손자녀는, 상속하여야 하는 그들의 부모가 상속 개시시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들이 법정상속을 한다. 그들은 법정상속에 의하여 그들의 사망부모에게 돌아 갈 상속분을 공동으로 상속한다」(동법 제532조제4항)라 하고, 중국법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대습상속인은 일반적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상속권을 가지는 유산액에 대해서만 상속할 수 있다」(동법 제11조)고 한다. 북한의 대습상속제도는 중국법의 모형과 비슷하고 러시아법과는 서로 많은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위의 두 나라의 법이 손자녀의 순위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습상속만을 인정하는데 비하여, 북한법은 손자녀의 순위 상속을 인정하는 위에 그것을 겹쳐서 인정하는 점에서 우선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두 나라의 규정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북한법은 위의 차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러시아법과 중국법에 의하면, 피대습

자가 상속권을 갖는 부모에 한정하고 있으나, 북한법에 있어서는 상속권을 갖게 되는 모든 상속인이 피대습자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의 두 나라에 비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법이 대습상속인을 상속받게 될 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하고 있으나 북한법은 그 자녀에 한정시키고 있다. 러시아법의 이러한 규정의 정신이 再代襲을 인정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아무튼 북한법은 再代襲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중국상속법은 「喪配한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하여, 喪配한 사위가 장인·장모에 대하여 주된 부양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여, 상속인의 배우자도 실질적으로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북한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相續分과 相續財産의 分割

1) 相續分

북한법 제47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고 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몫의 균분을 규정한다.

상속분규정에 관한 러시아법은 「가내용가구와 비품은, 그들이 속해 있는 상속순위 또는 상속분에 관계없이, 死者의 사망시까지 1년 이상 전부터 그의 집에서 死者와 동거한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제533조)라고 하여 특별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에게 그 가급권을 인정한다. 균분상속에 관해서는 중국법의 규정들이 매우 특이하다. 중국상속법에 있어서의 법정상속분은 동일순위의 상속인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3조제1항) 실제에 있어서는 각 상속인의 노동능력의 차이, 피상속인에 대한 생전부양 의무의 부담 등에 의해서 동일하지는 아니하

16) 리송녀, 앞의 논문 p. 177

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의 균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실재는 균분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적다고 알려지고 있다.¹⁷⁾

위의 두 나라 법과는 달리 북한법은 어떤 곳에서도 상속에 있어서의 加給制度나 또는 상속인의 능력 등에 따른 特別加給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한가정을 이루고 살던 성원 집단에 넘어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순위에 의하여 따로 살던 가족 및 가까운 친척들에게 넘어가게 된다」¹⁸⁾ 즉, 한가정을 이루고 살던 성원들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그들에게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¹⁹⁾ 가정내에서의 노동무능력자 또는 생전부양 의무의 부담자에게 상속에 있어서의 가급권이란 애초부터 무의미한 일이다.

2) 相續財産의 分割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가족성원 내지는 상속인 사이에서 공동소유로 된다. 공동소유관계의 성립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상속재산이 가정성원에게 공동적으로 승계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성원이 없는 경우에 일어난 상속의 개시로 볼 수 없다. 즉 전자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정성원 전체의 소유가 되어 가정재산의 몫이 늘어나게 되며, 가정의 경제적 토대가 그만큼 강화된다고 본다. 즉, 그것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가정성원 전체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가정성원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몫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며, 그들 모두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잘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다시 말하여 그 사이에서 성립된 공동소유관계는 분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정한 목적에 받쳐진 공동소유관계

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가족법 제46조에 의해서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상속재산의 분할의 일반적인 경우로서 거기서 성립된 공동소유는 공동재산의 분할을 전제한 것이 된다. 여기서의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공동소유상태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이 자기의 몫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공동상속인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북한법은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정신이나 상속의 실재에 따라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중국상속법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호이해, 상호양보, 화목, 단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유산분할의 시기, 방법 및 상속분은 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제15조)고 규정한다.

중국법은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등이 분할한다고 규정하는데, 분할의 선결요건으로서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피상속인에 의하여 부양되어 온, 노동능력이 없거나 생활재원이 없는 자, 혹은 피상속을 비교적 많이 부양한 자에게 우선 해당액을 분여한 나머지의 유산을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해서 급여하게 된다.

러시아법도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2차적으로 재판분할이 된다고 규정한다(동법제559조).

분할의 효과는 사회주의 상속법의 일반례에 따라 상속개시시에 소급한다고 본다. 상속재

17) 加藤美穂子, <中國家族法の 諸問題>(敬文堂, 1994) p. 301

18) 리송녀, 앞의 논문 p. 179

19) 상속법에서의 이러한 특성을 북한에서는 그들 영도자의 독창적인 사상을 상속제도에 구현함으로써 가정을 재산적으로 공고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한다.

산을 분할함에 있어 우선 상속인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등의 분할이 시행한다는 점, 그리고 상속인의 상호이해등의 정신에 입각해서 분할한다는 중국법 내지는 러시아법의 규범들은 북한상속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중국법에서 규정하는 특정인등에 대하여 하는 상속재산에서의 분여는 인정할 여지가 없다.

분할을 할 때 상속인 중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들은 태아의 추정상속분을 보류하여야 한다는 러시아법의 규범(동법 제559조제3항)이 북한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동재산이 분할되기까지는 북한민법 제42조의 적용을 받으며, 분할에 의하여 비로소 개별재산이 된다.

7. 相續의 承認과 拋棄

1) 相續의 承認

러시아법에 의하면「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속자가 상속을 승인하여야 한다」(동법 제546조제1항 전단)고 하고 그 승인행위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동조제3항). 또한 북한법은 「상속은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52조제1항)고 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북한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의 뜻은 곧 러시아법 제546조 제1항전단의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상속인이 갖게 되는 상속권은 상속개시시인 피상속인의 사망에서 발생하고,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속승인」의 의

20) 그것은 제546조(상속의 승인), 제547조(상속승인기간의 연장), 제548조(상속승인권의 이전)등이다.
21) 중국의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나 세금과 관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에게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중국상속법 제33조는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법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완제하여야 하며, 세금의 납부와 채무의 완제는 그 유산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한다. 유산의 실제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1항)라 하고,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이 법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 및 채무에 대하여는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2항)고 명문한다.

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법의 「상속은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라는 뜻은 상속의 승인행위를 6개월 내에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승인행위는 상속물을 취득하기 위한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러시아법은 승인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두고 있는데²⁰⁾ 이러한 법률기술들은 북한의 법의 실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6개월이라는 승인기간은 성질상 연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효기간의 성질을 갖는다.

북한법 제51조는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라 하고, 다른 한편 러시아법은 「상속을 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그에게 이전된 재산의 실질가치를 한도로 하여 사자의 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동법 제553조 전단)고 규정한다.

위의 두 규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즉, 첫째, 북한법을 한정승계의 원칙을 러시아법과 아울러서 채택하고 있다. 둘째, 한정승계의 효과는 한정승인과 같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승인행위가 있으면 곧 한정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상속받은 재산」이라든가 「재산의 실질적 가치」라는 뜻은 한정승계의 범리로 미루어보아 「적극재산」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2) 相續의 拋棄

북한상속법은 한정승계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의 기간내에 상속승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²¹⁾ 그러나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을 위한다든가 또는

다른 이유등으로 적극적으로 상속포기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의 권리일 수도 있다.²²⁾

러시아법은 상속을 포기함에 있어 누구에게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경우(제 550조제1항 후단), 누구를 위하여 포기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상속이 포기된 경우에 일어나는 효과(동조 제2항), 포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동조 제3항), 그리고 포기선언서의 제출요건(동조 제4항)등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법에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심스럽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는 중국법과 마찬가지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국법이 그 기간을 두지 아니하는 이유는 유산처리 전에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25조 제1항)라고 하더라도, 법이 한정승계의 원칙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불리함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²³⁾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법정승인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입법적으로나 해석론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법에 의하면, 「상속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상속을 거부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동법 제47조 제2항)고만 하고 있어, 상속의 지정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내에 상속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한다. 이 경우 북한법은 다만 「상속받을 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²⁴⁾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이 경우는 상속인 부존재에 의한 국고귀속이라 해석해야 한다.

「한편 상속재산이 국고로 귀속하는 경우는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상속을 받았거나 비법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있다」.²⁵⁾ 나아가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국가를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 또는 법정상속인이 없고 상속재산의 일부만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그 나머지 재산 등도 국고에 귀속될 것이다.

Ⅲ. 遺 言

1. 北韓法上의 遺言의 意義

북한의 새로운 가족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가족에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고 상속제도도 가정재산의 유지라는 점에 맞추어서 규제하고 있다.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법정상속은 비록 개인재산을 가정밖으로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상속재산을 가정 내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가정재산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아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한다. 그러나 유언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이 가정 밖으로 흩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가정의 유지 내지는 가정재산의 확보라는 시각에서 보아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유언상속을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처분자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뿐만 아니라 유언제도를 인정하는 사회주의의 일반적 성향과도 맞지 않는다. 여기서 북한의 가족법은 유언에 의한 재산의 처분은 인정하되, 유언의 자유가 가정재산의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북한 유언제도의 하나의 큰

22) 이 점에 관해서 러시아법은 「유언상속인 또는 법정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제550조제1항 전단)고 하여, 포기의 권리성을 명분으로 규정한다.

23) 加藤美穂子, 앞의 책, p. 304

24) 따라서 이 경우는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결적인 때도 해당될 수 있다.

25) 신영호, 앞의 논문 p. 741

특색이 있다.

유언상속에 관한 사회주의 제국의 입법례는 한결 같이 유언 우선의 원칙을 취하여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민법과 중국상속법의 태도나 북한 가족법의 태도가 모두 그러하다. 이에 따라 유언법의 내용도 매우 자세하여 러시아법은 제 533조에서 제545조 사이에서 12개조문에 걸쳐 규정하고, 중국상속법 또한 제16조에서 제22조 사이에서 7개조문에 걸쳐 규정한다.

이에 비추어 북한법은 단 1개조문을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i) 유언자유 ii) 유류분 iii) 재판소의 관여라는 세 개 원칙만 규정한다. 따라서 북한유언법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는 러시아법과 중국법상에 나타나 있는 여러 규정을 더욱 참작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遺言의 自由와 遺言相續의 制限

러시아와 중국의 상속법은 모두 유언상속인과 유언의 대상이 되는 개인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러시아민법에 의하면「유언자는 그의 법정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 혹은 전부로부터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유언으로 박탈할 수 있다」(동법 제534조제1항)라 하여 유언자유 의 절대성을 규정하는 위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법정상속인 중 1인이거나, 국가, 특정국가 기관, 협동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국상속법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제16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 두나라의 규범은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

산을 「공민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내용가구와 비품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²⁶⁾ 라든가 또는 단순히 「개인재산」²⁷⁾이라 규정하여 상속의 대상이 되는 개인재산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아니한다.

북한법은 유언상속인이 됨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법정상속인 중의 1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또한 법정상속인이 아닌 전연 외부의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유언상속에서 넘겨 줄 수 있는 재산을 유언자의 개인재산에 엄격하게 국한시키고 있다. 그래서 유언자가 설사 가정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몫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재산은 유언으로써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28) 29)}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하여, 유언자유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遺留분에 해당될 수 있는 규정인데, 이러한 취지는 중국법³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 遺言의 方式

북한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한 명문은 두고 있는 바 없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론에 의하면, 유언은 원칙적으로 서면이 요구되며 또 2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또 부득이 말로 유언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입회인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³¹⁾

(31쪽에 계속)

26) 러시아민법 제534조 제1항

27) 중국상속법 제16조 제1항

28) 리송녀, 앞의 논문, p. 178

29) 법정상속과는 달리 유언상속에 있어서는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재산은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유언상속을 통하여 가정의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보아, 유언제도는 가족의 공익을 위하여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리송녀, 앞의 논문, p. 177).

30) 중국상속법 제19조 「유언함에 있어서는 노동력이 없고, 생활재원이 없는 상속자에 대하여 필요한 생활을 보하여야 한다」

31) 윤종철, 앞의 논문, p. 126